



금융감독원

수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2층(방배동, 프린스 효령빌딩)]

(경유)

사본수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음은 2017년 11월 29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 연합회의 민원(건의) 사항(201714613)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 연합회는 ① 차령이 오래된 차량 및 ② SUV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 ③ 보험(사고)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폐지, ⑤ 사고대차차량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4. ①과 관련하여 귀 연합회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연장신청이 가능한 바, 단순히 차령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차량보다 “낮은 등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령연장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대차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적법하게 운행연한을 연장한 동급의 차량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빌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 무조건 피해차량보다 “낮은 등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②와 관련하여 귀 연합회는 SUV 차량 사고로 그보다 높은 동급의 승용차를 대차했을 경우, 사고차량 기준 SUV 대차가격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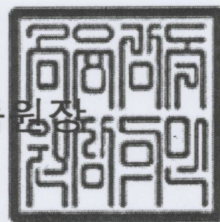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 시 동일규모)의 일반승용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SUV·RV·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임과 같이 SUV·RV·승합차 그룹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

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③~⑤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원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우리 원 업무추진 시 참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12/13

전결 12/13

선임조사역

변덕규

팀장(J)

문형진

합의자

시행 보감특수-264

(2017.12.14.)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469

팩스번호 02-3145-7489

/ dk-byeon@fss.or.kr

/ 비공개(7)

(붙임)

Q) 교통사고 시 SUV, RV, 승합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 발생 시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 시 동일규모)의 일반승용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SUV·RV·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 예시된 SUV·RV·승합차 그룹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3. 나. 대차료 인정기준액

[예시]

차종		차명
승용 (RV·SUV)	소형(A) (1,600미만)	◦ 트랙스, QM3(D), 티볼리
	중형(B) (1600~2000미만)	◦ 카렌스, 올뉴카렌스, 캡티바, 윈스툼, 스포티지, QM5, 투싼, 액티언, 싼타페, 렉스턴, 쏘렌토, 올뉴산타페, 올뉴쏘렌토
	대형(C) (2,000이상)	◦ 올뉴산타페(2.2), 올뉴쏘렌토(2.2), 캡티바(2.2), QM5(2.5), 맥스크루즈, 뉴카니발9인승, 카니발 리무진 9인승, 베라크루즈, 모하비
승합 11인(D)		◦ 코란도투리스모11인승, 그랜드카니발11인승,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 11인승, 로디우스11인승,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승합 12인(E)		◦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2199cc 올뉴산타페인 경우, RV 대형 그룹(C) 내에 있는 차종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